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2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2011.12.31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등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

- 1)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- 2)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- 3)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- 4)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※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관련 조문 : 제85조의2, 제58조의2, 제56조 제3항, 제60조제4항
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등 정비

- 1)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(안 제2조)
  -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만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
- 2)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(안 제8조)
 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된 감면율은 삭제

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 정비

### 3. 개정근거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

### 4. 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12.1.26. ~ 2012.2.15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2.2.16)
- 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”를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(재단법인에 한정한다)가 과세기준일 현재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”를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재산세”를 “재산세(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8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**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.

1. 특급호텔 : 20%
2. 특급호텔 이외 호텔 : 10%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 중 “지방세”를 “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,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(재단법인에 한정한다)가 과세기준일 현재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</p>	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율”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</p>	<p>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재산세(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-----</p>
<p>제4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에 한정한다) 2. 구분지상권 설정등기(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) 3.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</p>	<p>〈삭제〉</p>

현행	개정안
<p>법인(단체를 포함한다)의 법인등기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,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항에서 “지방공사 등”이라 한다)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
<p><b>제5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</b></p> <p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(분양·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</p>	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
<p>제7조(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) ①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.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8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1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(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. 이 조에서 같다) 공급가액 중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(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신고된 해당 연도 공급가액을 기</p>	<p>제8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.</p> <p>1. 특급호텔 : 20%</p> <p>2. 특급호텔 이외 호텔 : 10%</p>

현행	개정안
<p>준으로 한다)인 경우</p> <p>2.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</p> <p>가. 특급호텔 : 20%</p> <p>나. 특급호텔 이외 호텔 : 10%</p>	
<p>제9조(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) ① 「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-----          -----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          세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